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.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2항제2호).

나.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(안 제14조제7항 신설).

다. ‘행상 또는 노점’을 ‘거리가게’로 함(안 제17조제1항제4호)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